



제424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지명의 외에 법인 등 여부 표시 의무화〉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08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로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인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법인등임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 정 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 ----- ----- <u>이 경우 법인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하 이 항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실명에 법인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¹⁾(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²⁾하고 있음.

○ 실지명의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칭,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말한다.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납세번호를 의미함.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실지명으로 할 수 있음.

□ 최근 전세사기 수법의 하나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를 임대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 이를 토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소위 ‘삼행시 통장’이 활용된 바 있음.

○ 「국세기본법」 3)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은 일정한 요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

건4)을 갖추어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 소위 ‘삼행시 통장’이 활용된 전세사기 수법은 임대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명칭을 만들어⁶⁾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로 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명의로 해당 계좌 명의로 동일

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 5. 재산상황 /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예를 들어 임대인의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단체명의 약칭을 이와 동일하게 만들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약칭으로 승인을 받는 방식임. 이 경우 해당 단체의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로는 ‘홍길동’이 됨.

하다는 점만 확인한 후 보증금 등을 이체하였다가 추후에 전세사기에 해당함을 알게 되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사단(이하 “법인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실지명의로 법인등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과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지명의를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명의를 법인등의 명의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상술한 소위 ‘삼행시 통장’을 활용한 전세사기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명의를 자연인의 명의로 유사하게 인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이 법인등에 해당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법인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등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뱅킹 등을 활용한 금융거래 시 상대방의 명의는 실지명
의가 표시되게 되나, 해당 실지명외에 추가적으로 법인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해당 실지명외가 법
인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
발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실지명외’가 여러 법령에서 동일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정의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6
